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33
----------	------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홍성룡 의원이 2019년 5월 21일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술 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덕 의원이 2019년 7월 31일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용 의원이 2019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을 2019년 12월 18일 제290회 정례회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창업, 기술창업, 창업자, 제대군인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창업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다. 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과 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창업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라. 시장은 창업자와 기술창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시장은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바. 창업 저변의 확충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제대군인 등에게 창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2.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제대군인”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역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제대군인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 and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 생태계 조성 and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⑤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창업교육) 시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제대군인 등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창업지원시설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창업지원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시장은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2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Q)	(Q) 86	보건업	
	(C) 24	1차금속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